

'25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실장 손봉현
(법학박사, bhson@kiaf.kr)

Table of Contents



개요

- 생활화학제품
- 온라인 판매자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 참여자
-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표시광고법

- 표시와 광고
- 부당한 광고
- 부당한 광고의 책임

화학제품안전법

- 주요 용어
- 주요 내용
- 금지행위

'25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 개요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실장 손봉현
(법학박사, bhson@kiaf.kr)

개요 - 생활화학제품

의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예) 세정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접착제, 방향제

안전관리제도

제품의 위해성 평가
제품별 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제품별 표시기준 마련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위해 우려 제품 등에 대한 유통 차단



개요 - 온라인판매자

의의

오픈마켓에 입점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 하여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 통신판매업자)

법률관계

통신판매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와 등록을 마쳐야 하며,

- ①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완료
→ 국세청(www.hometax.go.kr/)
- ② 관할 시군구청 등에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 정부24(www.gov.kr)
- ③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자체 쇼핑몰을 개설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완료 → 정부24(www.gov.kr)

관련 법률이 정하는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① 판매활동은 전자상거래법이 정하는 사항 준수
- ② 판매 게시물은 표시광고법이 정하는 금지사항 준수
- ③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이 정하는 사항 준수

'25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 전자상거래법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실장 손봉현
(법학박사, bhson@kiaf.kr)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 참여자

통신판매업자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예) 오픈마켓 입점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TV 홈쇼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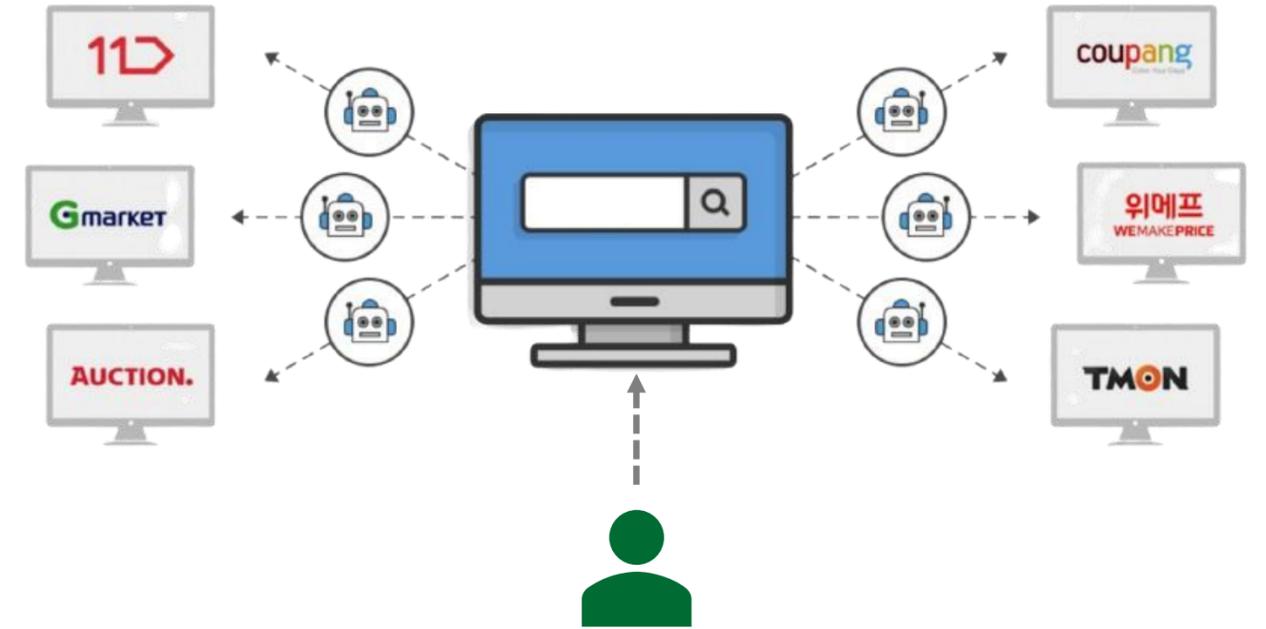
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

예) 오픈마켓 운영자

셀러툴(tool) 사업자

오픈마켓과 입점 판매자 사이에서 판매용 상품등록 및 주문 관리 등 판매자 업무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법률관계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통신판매업자-셀러툴 사업자)

: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의무

-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11①)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개인정보보호법 §15②)
 -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의 이용금지 (동법§18①)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11②)
 - 예) 도용여부 확인, 거래기록 제공,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피해 회복 등
- 위반 시, 공정위의 시정명령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전체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정보 검색, 뉴스 보기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회원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메일, 캘린더, 카페, 블로그 등과 같이 개인화 혹은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 네이버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 구매자명 ▾ 구매자ID ▾ 수취인명 ▾ 수취인연락처1 ▾ 수취인연락처2 ▾
- 통합배송지 ▾ 기본배송지 ▾ 상세배송지 ▾ 구매자연락처 ▾
- 배송메세지 ▾ 결제수단 ▾ 개인통관고유부호 ▾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 행정감독,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 (§12)
 -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전자문서로 신고
 - 신고사항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위반시 시정명령, 미신고·거짓신고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불응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신고사항의 변경·휴업휴업 후 영업재개, 폐업의 경우에도 신고의무
 - 위반시 시정명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
 - 시정명령 불응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휴업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업무, 대금환급 관련 업무의 계속 의무



콜센터
1588-2188
국번없이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통신판매통신판매업신고통신판매업통신판매업신고증통신판매업변경신고통신판매업신고증 출력통신판매업 신고통신판매업 폐업통신판매업신고증 조회통신판매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군.구 >
--	---



공정거래위원회

소식·뉴스 ▾ 정책·제도 ▾ 정보공개 ▾ 심결·법령 ▾ 민원·참여 ▾ 해외경쟁정책 ▾ 기관소개 ▾

< **통신판매사업자**

- 등록현황
- 자료 다운로드
-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 국외사업자 등록현황

홈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

통신판매사업자조회 (일반이용고객)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구매권유광고시 준법의무

-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 준수 의무 (§22의2 ①)
 - 원칙적으로 수신자에게 (매 2년마다)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을 것
단, 자신과 거래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거래한 것과 같은 제품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사전동의 없이 가능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상품정보제공의무

- 계약체결 전에 「상품정보제공 고시」에서 정하는 정보를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할 의무 (§13④)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생활화학제품

- 품목 및 제품명 ▪ 용도 및 제형 ▪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
-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 효과·효능(승인대상 제품에 한함)
-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유무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 ▪ 사용상 주의사항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번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에 생산·수입된 경우 자가검사 번호 표시)

살생물제품

-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 유형 ▪ 유통기한
- 중량 또는 용량 및 표준사용량 ▪ 효과 및 효능
-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 유무
-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기타 화학물질의 명칭
- 제품 유해성 · 위해성 표시
-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승인번호**

'25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 표시광고법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실장 손봉현
(법학박사, bhson@kiaf.kr)

표시광고법 - 표시와 광고

표시

표시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 단순히 나타낸다는 의미로도 사용

예) 광고에 신고번호를 표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0000**
 품목:
 제품명:
 주요물질:
 제조자, 연락처:
 수입자, 연락처:

그림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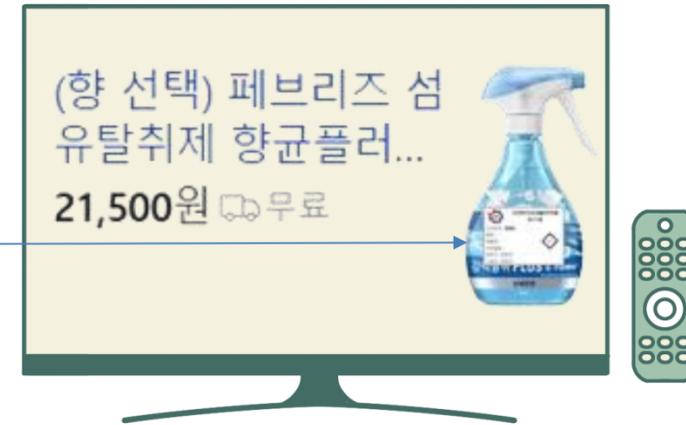


광고

광고란 인터넷, 티비, 잡지 등 **매체**를 통해 일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

※ 광고에 포함된 제품사진에 표시사항이 포함된 경우, **광고**로 취급

제품 이미지



제품상세 설명, 광고 카피

찌든 때와 보이지 않는 숨은 얼룩은 물론 변화하는 식습관 속 다양한 얼룩! 섬유 속 깊은 얼룩까지 남김 없이 완벽하게!



판매글 게시물 제목

(항 선택) 페브리즈 섬유탈취제 향균플러...

21,500원 무료

FAQ

제목	Q1.[세제] 희석해서 사용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78
<p>물과 5:1 또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000 세제는 천연, 효소세제이므로, 인체와 환경 그리고 애완동물에 안전합니다. 000 세제는 세척 후, 역한 냄새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p>		
<input type="button" value="목록"/>		

구매후기

구매고객 후기
직접 써 보신 다른 고객님의 후기를 꼭 확인 해주세요!

구매사이트: 000 ID: 다써봐씨 ★★★★★
 친환경 세제라서 믿고 구매했어요. 역시 구매하길 잘한 것 같아요. 배송도 빠르고요~ 강추합니다.

구매사이트: 000 ID: 구매왕 ★★★★★
 은은한 향에 세정력 이 정말 좋습니다. 거품도 잘 나고 깨끗하게 세탁 잘되는 것 같습니다. 내 몸 피부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천연물질로 만든 세제라고 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와 광고

표시·광고의 방법

생활화학제품임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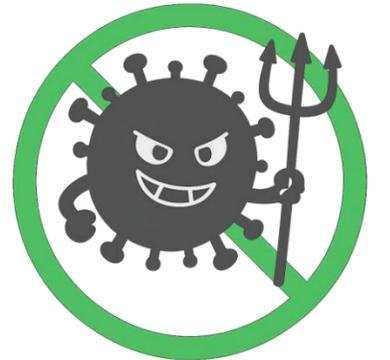
- 제품명·품목명 제시 : 세정제, 탈취제
- 해당 품목의 목적(정의), 효과·효능 제시
 - 찌든 때 소옥~ : 세정제, 세탁세제라는 의미
 - 냄새제거 : 탈취제라는 의미
- 문자, 도형, 이미지 등 수단 불문
- 제조사·벤더사 제공 상품 상세 설명 이미지 내 문구 또는 온라인 판매자 추가 문구

주방세정 위생용품 **무독성** 세정제

20%

2,170원 **1,730원**

배송비 3,000원



표시광고법 - 부당한 광고

거짓·과장의 광고

- 거짓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즉,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
- 과장의 광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 즉, 광고에서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과장)를 의미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은 광고 내용의 진실성이며, 이는 광고 문구의 명료성, 글자 및 도안의 상대적 위치·크기·색상, 및 광고 전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시험성적서와
다른 내용의 광고

99.99% 살균 효과

시험 성적서	
신청자 : 한스도리	KATRI NO : SHG19-0001002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교촌로 45-1	접수일자 : 2019. 10. 16
제출자 :	발급일자 : 2019. 10. 30
	위 도 : 식품위생법
시험 항목	시험 결과
	시료1
1) 시험균①	2315:2016
2) 시험균②	
	99.9%

살균력(%)

99.9%

표시광고법 - 부당한 광고

기만적 광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가 소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
(적극적으로 거짓을 전달하지는 않음)



CMIT, MIT 성분 미함유!!!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경우

기업의 스스로 만든 자가 마크임을 알리지 아니하여
제3의 기관으로부터 제품의 무독성을 인증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 부당한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 **부당한** 비교 광고란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자기의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광고하는 것을 의미

→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하고,
비교 내용이나 방법이 적절할 것이 요구됨

- 경쟁사업자와의 정당한 비교는 허용되나, 부당한 경우에만 규제



자연유래 성분 50% 강화

비교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비교 광고

비교 대상의 종전 자연유래 성분 함량을 밝히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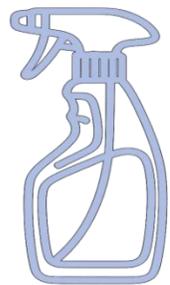
(예, 종전 2%에서 3%로 함유량을 늘린 경우)

→ 기만적 광고

표시광고법 - 부당한 광고

비방 광고

- **비방**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이나 불리한 내용만을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비교의 형식이라도 전달하려는 내용의 중심이 비방에 있다면 비방광고



A사 제품



자사 제품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는 유리 용기

경쟁사 제품의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될 수 있다는 불리한 내용을 강조

표시광고법 - 부당한 광고의 책임

표시광고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의 관계

- 양 법률은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서로 달리하므로,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동일한 광고에 대하여 양법을 각각 적용하여 규제하더라도 중복규제는 아님

광고 내용	표시광고법 (공정거래위원회)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
무독성, 인체무해 등	거짓 또는 기만적 광고	제34조제1항제1호 위반
위해방지를 위한 문구 누락	-	제34조제1항제2호 위반
살생물제품 오인 우려 광고	거짓 또는 기만적 광고	제34조제2항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의 책임

부당한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 시정명령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명해질 수 있음
- 과징금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형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손해배상 :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5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 화학제품안전법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실장 손봉현
(법학박사, bhson@kiaf.kr)

화학제품안전법 - 개요

배경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가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체계적 관리 등 사전 예방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목적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살생물제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 함

경과

2016년 입법 예고, 2018년 제정·공포되어 **2019년 시행**
법 시행 이전 생활화학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등으로 관리되었음

주요 행정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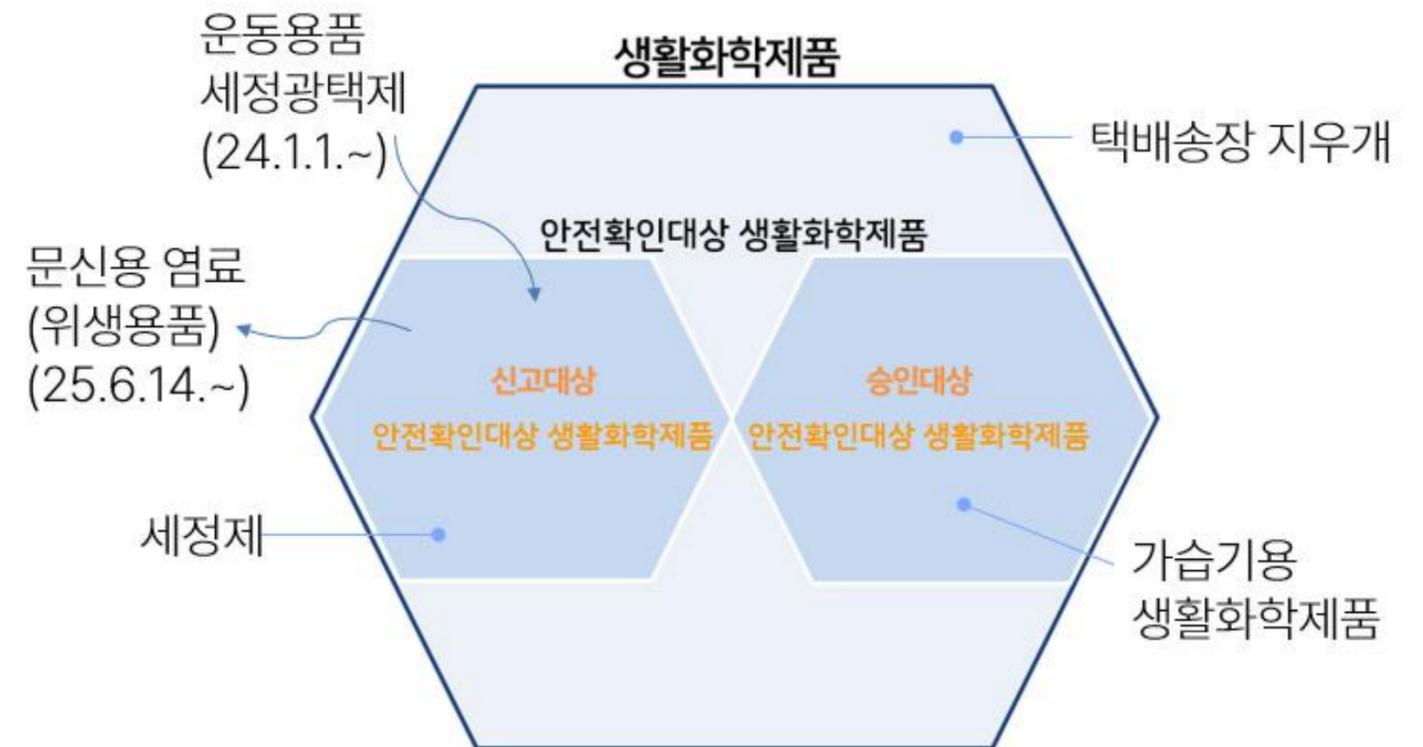
화학제품안전법 - 주요 용어

생활화학제품 (§3 iii)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 iv)

-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제조·수입업자가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화학물질안전원에 승인 신청



화학제품안전법 - 주요 용어

◦ 신고 및 확인 절차



살생물제 (§3 vi)

-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물질 → 승인 필요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 제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승인 필요
- (살생물처리제품) 유해생물 제거를 부수적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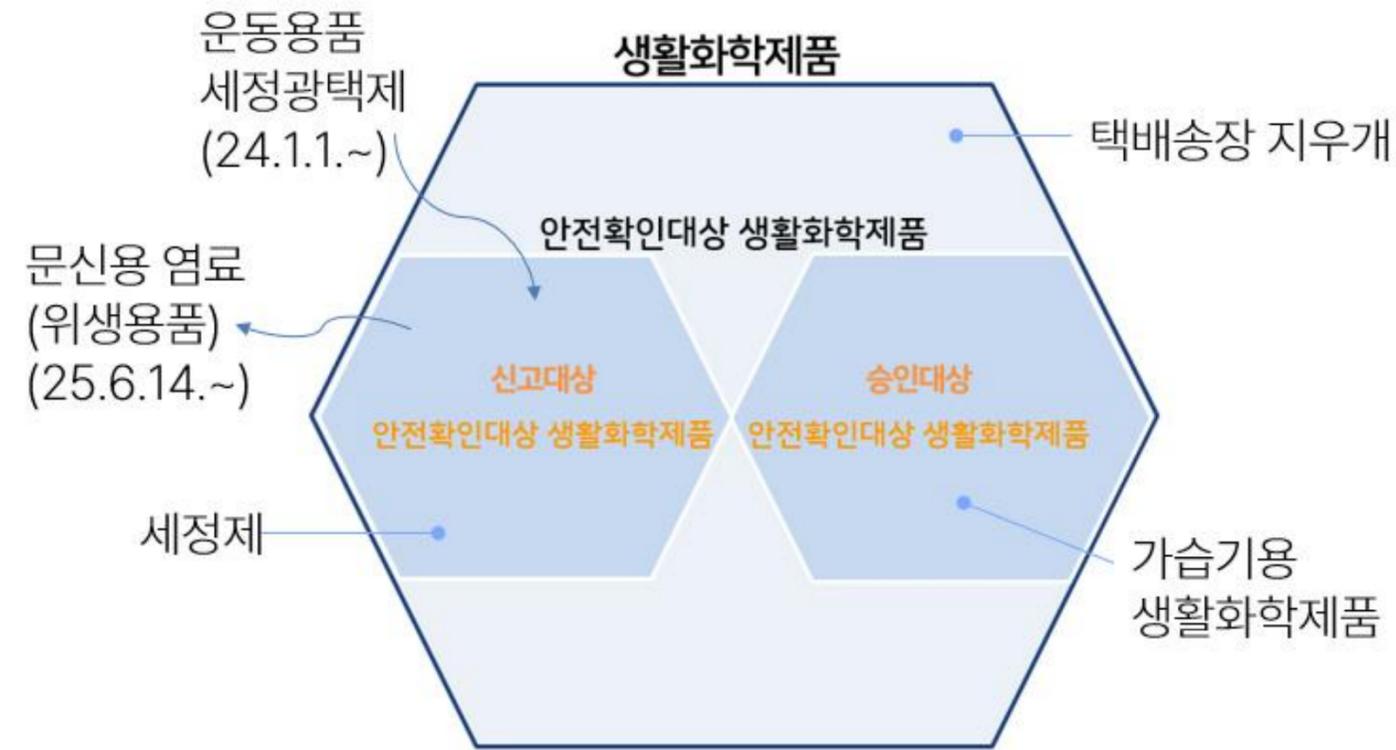
항균 처리 필터

제품의 주된 목적 - 물 또는 공기의 정화

제품의 부수적 목적 - 제품 내 미생물 증식억제

항균 처리 필터(○)
99.9% 항균(X), 99.9% 살균(X)

화학제품안전법 - 주요 용어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 화학물질안전원에 승인 신청

화학제품안전법 - 주요 용어

신고·승인 번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 후 부여받은 번호

- 신고번호는 알파벳 + 숫자 총 10자리로 구성 예) AA00-00-0000
- 승인번호는 숫자 8자리로 구성 예) 0000-0000

※ 자가검사번호 제도는 2019. 5. 31. 이후 폐지

- 자가검사번호는 알파벳 + 숫자로 구성 예) A-A00A-A000000-A150
- 유효기간내 제조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가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AA00-00-0000 • 품목 : 세탁세제

제품명: 센서티브 세제 무향

용도 : 섬유용, 섬유 얼룩제거용, 신발용, 홈드라이클리닝용

제형 : 액체형 제조연월 별도표시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화학제품안전법 - 주요 용어

대표제품·파생제품 (고시 §2 vii)

대표제품이란 안전기준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

파생제품이란 대표제품과 품목·용도·제형이 동일하고,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

➔ 안전기준적합확인 의무는 없이 신고의무만 존재

- 파생제품은 대표제품과 동일한 신고·승인 번호 사용
- 파생제품은 대표제품과 다른 제품명 사용 예) △△방향제 vs. △△방향제(라벤더향)
- 파생제품의 품목·용도·제형을 대표제품과 다르게 표시하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미신고/미승인, 거짓 신고/승인)

제품명	품목	업체명	신고번호
△△△ 디퓨저 페퍼민트	방향제	△△△/직접생산	CB24-12-0000
△△△디퓨저 오렌지	방향제	△△△/직접생산	CB24-12-0000
△△△디퓨저 페퍼민트 리필	방향제	△△△/직접생산	CB24-12-0000
△△△디퓨저 오렌지 리필	방향제	△△△/직접생산	CB24-12-0000

화학제품안전법 - 주요 용어

목적

개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의 내지 사용 목적**

예) 세정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

용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사용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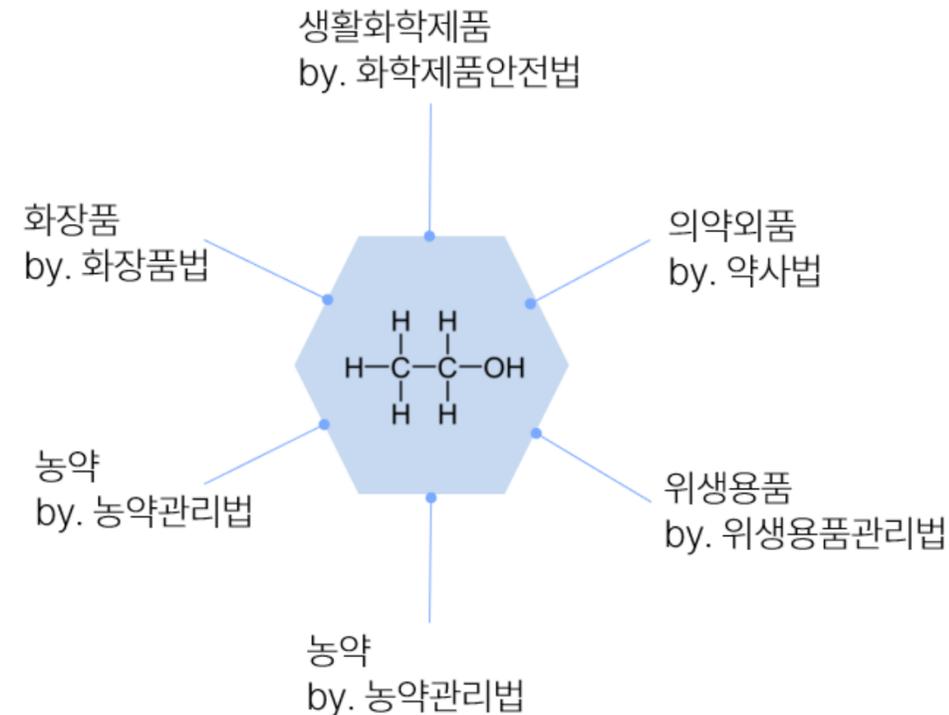
예) 일반용(오븐용·렌지후드용·욕실용·변기용 등)
자동차용(실내용·외부용)

제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게 만든 **형태**

예) 분사형(분무기형·스프레이형·연소형), 비분사형(액체형·고체형)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제품

개별 법률은 입법취지에 따라 각 제품의 목적·용도를 규율

예) 에탄올 → 손 소독용 에탄올 물티슈(의약품),
청소용 에탄올 물티슈(생활화학제품)

Q. 청소용 에탄올 물티슈를 '손 소독'으로 광고한 경우?

➔ 동일한 성분이라도 사용 목적·용도·함량에 따라 각 법률로 규율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각 법률 준수

화학제품안전법 - 주요 용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목적, 용도, 제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2] 등)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1. 공통기준

1. 제형의 구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다음 표1과 같이 구분되며, 분류란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한다.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 제형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형기준이 공통기준의 제형보다 우선한다.

<표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 구분

구분	분류
분사형	분무기형(폼형 포함), 스프레이형 ⁽¹⁾ , 훈증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 ⁽²⁾ , 지속방출형, 기타 ⁽³⁾
비분사형	액제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포함), 폼형, 고체형(타블렛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핫멜트형, 분말형, 티슈형, 캡슐형, 카트리지형, 펜형, 붓형, 팔찌형, 패치형, 함침물형, 탱크형, 보충형 ⁽²⁾ , 기타 ⁽³⁾

II. 품목별 안전기준

제1부 세정제품 (Detergent product group)

제1장 세정제 → 품목

1. 적용범위

목적 = 정의

세정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 2)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세척제, 헹굼보조제 등)
-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영유아용,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 4) 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삼입,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세정제(가발용 세정제, 생리컵 세정제 등)
- 5)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병원 내 의료행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세정제(의료기기 세정제 등)

<표1> 세정제의 용도

일반용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악기용, 필터용 ⁽¹⁾ , 기타표면세정용 ⁽²⁾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³⁾

- 주(1) 공기청정기용 및 에어컨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2)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운동용품(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세정제는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적용
 (3) 자동차용 워셔액 제외

화학제품안전법 - 적용범위

다른 법률에서 관리하는 제품에는 원칙적으로 화학제품안전법 미적용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용도로 판매·사용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 예외

적용제외 법률	적용 제외 대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농약활용기자재
먹는물관리법	수처리제
사료관리법	단미사료, 보조사료
식품위생법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약사법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
화장품법	화장품
친환경농어업법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다른 법에서 정하는 목적·용도로 광고·판매란?

동물 몸에 뿌리는 탈취제¹으로 광고·판매

➔ 약사법 목적·용도로 광고·판매로, 약사법 적용

동물의 몸과 생활공간(실내·물건)에 뿌리는 탈취제

➔ 약사법의 목적·용도를 벗어난 광고·판매로

약사법 + 화학제품안전법 모두 적용

건축용 접착제를 가정용 접착제²로 광고·판매

➔ 화학제품안전법의 품목으로 광고·판매로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X

단,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이 규율

예) 미용접착제, 문신용 염료(위생용품으로 이관) 등

화학제품안전법 - 적용범위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지정 품목

[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목적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용도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적용제외 품목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신고·승인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

신고·승인 내용과 다른
용도로 광고·판매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적용제외 품목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적용 제외 품목의 광고나 판매 게시물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명, 목적, 용도를 제시하는 경우
➔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신고나 승인받지 않은 경우 규제 가능

예) 화장품법상의 향수를 '방향제'로 광고·판매
예) 화장품법상의 향수를 '실내 공간 악취제거' 제품으로 광고·판매
예) 약사법상 의약외품인 동물 탈취제를 '강아지 용품' 탈취제로 광고·판매

화학제품안전법 - 적용제외

다른 법률에서 관리하는 제품에는 원칙적으로 화학제품안전법 미적용 (구체적 내용은 관련 법규정 확인 필요)

약사법상의 의약외품·동물용 의약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의약외품

: 구충청량제, 액취방지제, 치약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외용 소독제,
구강위생 제재(치아미백, 틀니 세척·소독제 등)

손소독제액(에탄올)

- 1 살균·소독
- 2 빠른 상처회복
- 3 감염관리에방

• 참고 : 기피제

- 모기 기피제(인체·신발·의류) → 의약외품
- 벌레용, 좀벌레용, 날벌레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기피제
- 파리, 모기에 직접 사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보건용 기피제



야외활동의 필수품!
모기/진드기 기피제



현재 식약처의 허가, 승인을 받은
패치형 모기기피제 없음



화학제품안전법 - 적용제외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1.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생리혈 위생처리제품 : 1) 생리대 2) 탐폰 3) 생리컵

나. 마스크 : 1) 수술용 마스크 2) 보건용 3) 비밀차단용 마스크

다.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1) 안대 2) 붕대 3) 탄력붕대 4) 석고붕대 5)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6) 거즈 7) 탈지면 8) 반창고

2. 「약사법」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구취 등의 방지제 : 1) 구중청량제 2) 액취방지제 3) 땀띠·짓무름용제 4) 치약제

나. <삭제, 2017. 5. 30.>

다.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

1)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아. 내복용 제제

자. 구강위생등에 사용하는 제제 : 1)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2) 유·소아의 손빨기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3)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보조제) 4)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

5) 의치(틀니),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에 탈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6)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 등을 염색 또는 착색하는데 사용하는 제제

3. <삭제, 2019. 1. 1.>

4.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 및 같은호 나목의 따른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패드, 스폰지 등과 같이 환부의 삼출물 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 나. 멸균면봉, 멸균장갑 등과 같이 감염예방 등의 목적으로 외과처치시 사용되는 멸균된 물품

다.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구강 청결용 물휴지 라.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마.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 바.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사. 제1호 각목과 유사한 물품

화학제품안전법 - 적용제외

다른 법률에서 관리하는 제품에는 원칙적으로 화학제품안전법 미적용 (구체적 내용은 관련 법규정 확인 필요)

위생용품관리법상의 위생용품

- 세척제 : 야채, 과일, 식기, 조리기구 세척용
- 헹굼보조제 : 식기세척기용
- 위생물수건·물티슈 : 식품접객업소에서 손 닦는 용도 등
- 문신용 염료, 일회용품 등

식기세척기용 세제



화장품법상의 화장품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작용이 경미한 것

: 목욕용 제품(목욕용 오일), 인체 세정용 제품(크렌저, 물휴지), 방향용 제품(향수, 코롱), 두발 염색용 제품(염모제 탈색용 제품), 두발용 제품(샴푸, 헤어오일), 손발톱용 제품(네일로션, 네일오일, 베이스코트), 면도용 제품(로션, 셰이빙 폼), 기초화장용 제품(화장수, 에센스, 오일, 크렌징오일), 체취 방지용 제품(데오도란트), 체모 제거용 제품(제모제, 제모왁스) 등



화학제품안전법 - 적용제외

다른 법률에서 관리하는 제품에는 원칙적으로 화학제품안전법 미적용 (구체적 내용은 관련 법규정 확인 필요)

손소독제?



솔로몬삼 >
청익인간 휴메딕 크린겔 500ml / 손세정제/손소독제

손세정제?



라이언코리아(주) >
[LION]아이깨끗해 거품형 대용량 450ml 리필 4개 (레몬/청포도/순) / 손세정제/핸드워시/손소독제

식기세척제(세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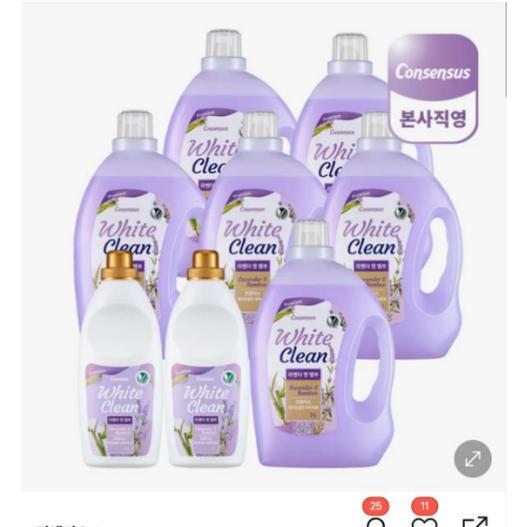
피니시 식기세척기 세정제 용기 250ml x2개

(물체) 세정제?



총 51,479개 구매 ?
호스타 옥실용 세정제 500ml x 4개

세탁세제?



컨센서스 >
컨센서스 화이트클린 비건 세탁세제 세트(세제 3Lx6개 +유연제 1Lx2개)

알콜티슈



한미마루 >
대일제약 알콜스왑 100매 알콜솜 알콜티슈 소독솜

물티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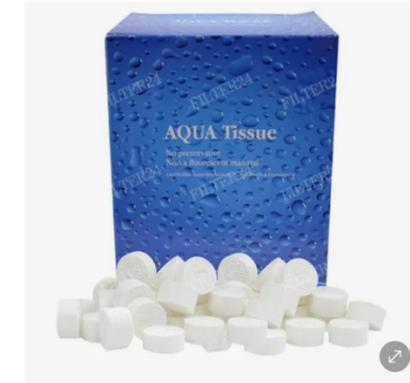
모나리자 >
모나리자 내추럴 프리미엄 고품량 80gsm 물티슈 캡형 (70매x10팩)

1회용 물티슈



물따로 >
물따로 대용량 건티슈 M 4팩(200매x4팩) / 일회용 손수건

코인티슈



압축 물티슈 1개-휴대용 업소용 캠핑용 코인물티슈 동전티슈

화학제품안전법 - 대상품목

2025. 7. 1. 현재 14개부 44개 품목 지정, 대부분 신고대상 품목(승인대상 8개 품목 제외)

분류	품목
제1부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제2부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제3부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제4부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제5부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제6부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분류	품목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제9부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제10부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제11부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슴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제12부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제13부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제14부 기타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슴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슴기용 보존처리제품*

*승인대상 제품, 승인대상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 음영 표시 품목은 2026.1.1.부터 생활화학제품 아닌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기 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25.12.31.까지 제조·수입 가능, 26.6.30.까지 유통·판매 가능

➔ 25.12.31. 이전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은 26.12.31.까지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유통·판매 가능

화학제품안전법 - 대상품목 - 세정제

목적(정의)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

용도

- 일반용 :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 자동차용 : 실내용, 외부용



! 다른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인체와 직접 관련된 제품, 일상 생활공간 이외의 장소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

적용제외 품목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세척제, 헹굼보조제 등)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영유아용,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삽입, 접촉 등으로
-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세정제
(가발용 세정제, 생리컵 세정제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 병원 내 의료행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세정제
(의료기기 세정제 등)

화학제품안전법 - 대상품목 - 세탁세제

목적(정의)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섬유, 신발 등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

용도

- 섬유용
- 가죽용
- 신발용
- 섬유 얼룩제거용

적용제외 품목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고품 세탁비누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고품 세탁비누,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 물 등을 이용한 세탁이 동반되지 않는 섬유 얼룩제거용은 세탁세제가 아닌 제거제로 규율



화학제품안전법 - 대상품목 - 접착제

목적(정의)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을 서로 접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

용도

- 일반용, 순간강력용
- 용도별 사용대상 :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섬유용, 금속용, 도자기용(세라믹, 타일), 석재용, 유리용, 종이용, 점토용, 석조물용(석고), 필름용

적용제외 품목

- 「건축법」에 따른 건축에 사용되는 접착제
- 시멘트류, 실리케이트 염류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접착제
- 문구용·도배용 풀, 테이프 형태의 접착제
- 땀납, 은납 등 금속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접착제
- 미용 또는 분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착제 (가발·체모용, 가속눈썹·쌍꺼풀용, 인조손톱용 등)
➔ 미용접착제로 별도로 관리



화학제품안전법 - 대상품목 - 방향제

목적(정의)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공간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

용도

- 일반용 :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
- 자동차용 : 실내용

적용제외 품목

- 「화장품법」따른 화장품 (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체취방지용 등)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향기 치료제 등)
- 제레용 향 및 말린 꽃잎 등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 패치·목걸이형 등 인체에 착용하거나 의류에 부착하는 제품



화학제품안전법 - 대상품목 - 탈취제

목적(정의)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 제품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

용도

- 일반용 : 실내공간용, 물체용, 밀폐공간용*
*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
- 자동차용 : 실내용



반려동물 용품 살균탈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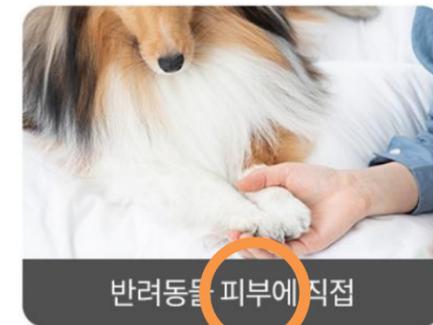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 제GB20· 호

*품목: 살균제, 탈취제 *제품명:

*용도: 살균제-[일반용(일반물체용)], 탈취제-[일반용(물체용)]

적용제외 품목

- 인체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탈취제
- 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삽입,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생리대, 속옷 등)의 탈취제



제품구분	동물용의약외품
------	---------

화학제품안전법 - 대상품목 - 살균제

목적(정의)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에서 살균, 항균, 소독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

용도

- 일반용 : 일반물체용, 배수관용, 필터용, 곰팡이제거용, 밀폐공간용
- 특수목적용 : 어린이용품용, 칫솔·혀크리너용
-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 일반물체용, 물걸레 청소기용, 변기 수조용



청소용 살균 물티슈(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	FB19-01-
품목군	세정제품, 살균제품
품목	세정제, 살균제

적용제외 품목

-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물수건, 물티슈 등)
-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소독·항균제품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 살생물처리제품
- 인체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제품
-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병원 내 의료행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살균제(의료기기 살균제 등)



물티슈(화장품)



손 소독 물티슈 (의약외품)



식기 살균제(위생용품)



식당 물티슈(위생용품)

화학제품안전법 - 금지행위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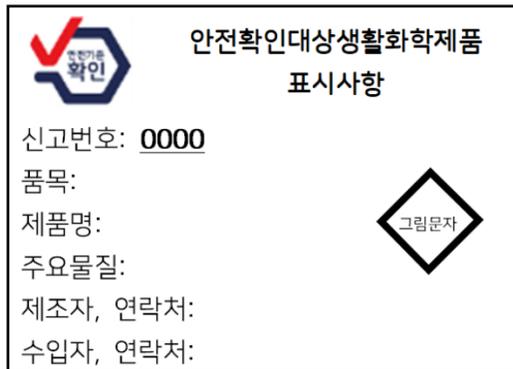
제조자·수입자

안전기준 (§10 ①, ④, ⑥)

안전기준 적합 확인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사실 신고
또는 제품의 유효성·안전성·위해성 등에 대한 승인
특정 품목·물질의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기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할 것
: 제품의 명칭, 제조자·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량 또는 용량,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신고 또는 승인 사항,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유통·판매자

안전기준

-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조·수입 금지된 제품의 판매(광고) 금지
- 미신고·미승인 제품의 판매(광고) 금지
: 신고·승인 유효기간(3년) 경과 제품, 변경 신고·변경승인 누락 제품
신고·승인 내용과 다른 용도·품목·효과·효능의 제품
- 위반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표시기준

- 표시기준 위반으로 제조·수입 금지된 제품의 판매(광고) 금지
-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광고) 금지

표시·광고 제한 (§34 ①, ②, 표시광고법 §3 ①)

-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금지문구 사용 금지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수 문구의 누락 예) 신고번호·승인번호
-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 거짓·과장·기만 등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표시광고법 §3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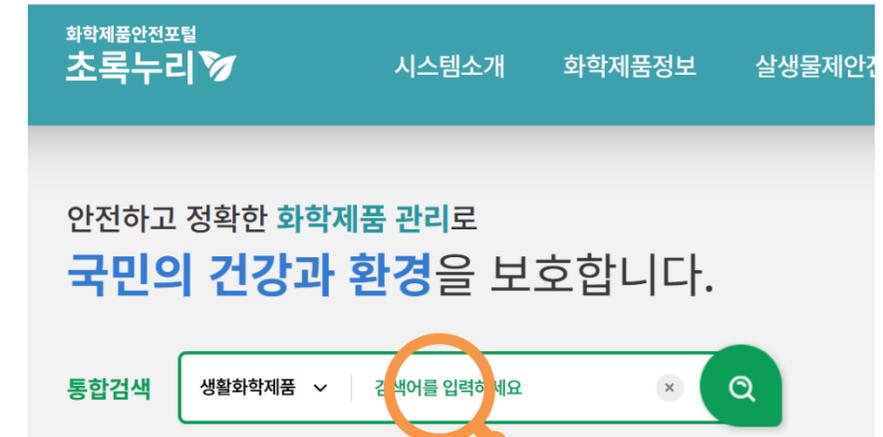
화학제품안전법 - 금지행위 - 미신고·미승인 제품 판매 금지

금지행위 유형

- 신고대상임에도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미신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후, 미신고
- 승인대상임에도 미승인
- 신고·승인된 범위를 벗어난 다른 제품으로 판매(광고)



초록누리 접속



신고승인 번호, 제품명, 품목명 등 검색

위반사례

미용접착제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미신고
인조손톱 부착용 접착제를 판매(광고)



(승인대상) 가슴기용 생활화학제품

※ 2025. 6. 30.현재 승인제품 없음
: '가슴기' 표현, 가슴기 사용 유도 제품 등



저
★★★★★ (0)
47,500원
가슴기 아로마 디퓨저 오일 디퓨

일부 향초를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한 후,
새로운 "사과향" 제품을 신고없이 판매

※ 파생상품으로 신고 필요

모델명	품목	업체명	신고번호
향초(라벤더향)	초	주식회사 향초/자체생산	EB00-00-0000
향초(민트향)	초	주식회사 향초/자체생산	EB00-00-0000

화학제품안전법 - 금지행위 - 신고·승인과 다른 내용 광고 금지

금지행위 유형

- 신고·승인된 내용과 다른 품목으로 표시·광고
- 다른 용도로 표시·광고

위반사례

습기제거제로 신고한 제품을
탈취제 + 습기제거제로 판매(광고)

**다른 품목(부수적 효과)
이런공간에서 사용하세요**

습기와 냄새까지 한번에 잡아보세요!

다른 품목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를
공기소독용 살균·소독제로 판매(광고)

차아염소산수 뿌리는 소독제 만들
기 집안 아파트 소독 공기 분사형 소독제

10,020원

☞ 최대 501원 적립

방역 소독제 소독 살균 바이러스 제거 방역 약품
공기 소독

★★★★★ 0.0 0건 리뷰

1% 4,070원

4,020원

다른 용도

제11부 살균제품 (Disinfection products group)

제1장 살균제(Disinfectants)

1. 적용범위

살균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에서 살균, 향균, 소독 등을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살균제의 용도

일반용	일반물체용 ⁽¹⁾ , 배수관용, 필터용 ⁽²⁾ , 곰팡이제거용, 밀폐공간용 ⁽³⁾
특수목적용	어린이용품용 ⁽⁴⁾ , 칫솔·혀크리너용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⁵⁾	일반물체용 ⁽⁶⁾ , 물걸레 청소기용, 변기 수조용

일반물체용으로 신고한 살균제를
어린이용품용 살균제로 판매(광고)

우리 아기들을 위협하는 유해세균들
정난감살균제로 안전하게 제거하세요



아이 용품 관련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한 정난감 살균제 아래 사용처를 확인하세요.
플라스틱 장난감, 실리온, 고무 장난감, 천 장난감, 원목 장난감, 책, 카드 등.



화학제품안전법 - 금지행위 - 금지문구 사용 광고 금지

금지문구 유형

구분	예시
무독성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환경·자연친화적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추출(자연에서 유래·추출한 물질명·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무해성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인체·동물친화적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위반사례



1+1 무알콜 천연 살균제 장난감소독 놀이방 유치원살균 공기 바이러스 살균 소독 인체무해 나로꼬 모엘로우
선택 1+1 무알콜 천연 살균제 장난감소독 놀이방 유치원살균 공기 바이러스 살균 소독 인체무해 나로꼬모엘로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자연 유래 성분 사용을 바탕으로
각종 세균 및 담배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제품입니다!

무독성/무자극/무화학향료/무색소!
無첨가 제품으로 언제 어디에서든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섬유유연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까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시죠?
피부가 많이 연약한 아이들
無식리콘·식물성 계면활성제 사용으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 금지행위 - 필수문구 포함 광고 의무

필수문구 유형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제품의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
(신고증명서,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 품목 및 제품명 • 용도 •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
- 중량·용량·매수·크기
- 효과·효능(승인대상제품에 한함)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유무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 • 사용상 주의사항
-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위반사례

품목 및 제품명	제품상세설명 참조
용도	제품상세설명 참조
효과 및 효능	제품상세설명 참조
신고·승인번호	제품상세설명 참조



제품 상세 페이지 내 확인 곤란한 이미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제품의 효과·효능 정보	제품명 (시료명)	품목			
	제형	용도			
	제품 내 살생물물질 정보	물질명	CAS 번호	배합비(%)	제품 내 용도
		[]성적서(인증서) []시험결과보고서 []기타 _____			
	효과·효능 입증	발행번호	해당시	시험기관	
시험일자		시험방법 (예시)ASTM E 2149			
결과 (시험생물종 결과치)	(예시)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 살균, Escherichia coli 99.9% 살균, 대장균(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 살균, 대장균(Escherichia coli) 99.9% 살균				

화학제품안전법 - 금지행위 - 리콜 대상제품 판매 금지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 의무 (제품안전기본법 §13)

사업자는

-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
- 외국에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있었음을 알게된 때

해당 제품을 수거, 파기, 수리, 교환, 개선조치, 제조·유통의 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

➔ 국내외에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진 제품에 대한 판매(광고) 금지

위반사례

해외 런드레스 베이비 세제 1L

베이비 디터전트 1L 아기옷 전용세제 런드레스 벌크
50% ~~51,000원~~ 25,000원

판매가 중지된 상품입니다.
(사유: 승인/신고 번호 미표시)



이 상품은 현재 판매금지 된 상품입니다.



Recalled Maggie's Farm Bed Bug & Flea Killer



화학제품안전법 - 법령 개정 사항

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품 관리 전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대상으로 관리하던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품목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승인대상으로 관리하던 살서제, 살충제가 2026. 1. 1. 화학물질안전원의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2025. 12. 31. 까지 제조수입 가능하고 2026. 6. 30. 까지 유통판매 가능
- 살생물제품으로 **2025. 12. 31.** 이전 승인받은 제품은 2026. 12. 31. 까지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으로 유통판매 가능

문신용염료 이관

- 2025. 6. 14.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에서 식약처 위생용품으로 품목 이관
- 품목 이관일 이전까지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광고재단에서 2025. 11. 28.(용역기간) 까지 모니터링하고 재유통 제품 발견시 식약처에 전달하여 조치 예정

'25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실장 손봉현
(법학박사, bhson@kiaf.kr)